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24. 4. 26.(금)

자료문의 : 인권기획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480-2962
주책임자 : 인권기획담당관 권성희

(사)한국피해자학회 · 대검찰청, 춘계 학술대회 및 인권 전문검사 세미나 공동 개최

- 한국피해자학회(회장 김혜정, 영남대 법전문 교수)와 대검찰청은 '24. 4. 26.(금) 대검찰청 별관에서 '변모하는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주제로 『2024년도 춘계 학술대회·인권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 등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범죄피해자들은 여전히 형사사법 절차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형사절차에서 단순히 보호·지원의 객체가 아닌 권리 주체로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재정립하고, 실효적인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변모하는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주요 발표내용
 - 1부에서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라는 주제로 형사사법절차에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¹⁾의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재정립하는 내용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 2부에서는 '형사조정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형사조정 제도의 성과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서의 형사조정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자 및 토론자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앞으로도 검찰은 학계와 실무의 소통을 확대하여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1) 가해자, 피해자, 지역공동체가 참여하여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 경로를 제안하는 접근방식(UNODC 저음/김재희 외 공역,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제2판)」, 박영사, 2020. 3면.

I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4. 4. 26.(금) 14:00~18:00, 대검찰청 별관 4층 예그리나홀

● 참석자

- (사)한국피해자학회 소속 회원, 인권 전문검사 커뮤니티 회원 등
검찰 구성원,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등 120여 명

● 프로그램

◆ 사례발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례>

발표 : 조영곤 사무처장(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제1부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

사회 : 김혜경 교수 (계명대학교)

발표 : 김재희 교수 (성결대학교)

토론 : 조미선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김세희 검사 (서울중앙지검)

◆ 제2부 <형사조정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

사회 :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표 : 차경자 검사 (대검찰청)

토론 : 배상균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병호 사무처장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검찰청은 한국피해자학회 함께 '20. 5.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22. 4. '피해자 보호·지원의 현황과 과제', '22. 11. '스토킹 범죄와 피해자 보호', '23. 4.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학계와 실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례발표(조영곤 사무처장)

-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및 관련 우수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 ▲ (법정동행) 범죄피해자가 진술을 위해 법정 및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경우 차량, 경호 인력을 지원하여 안전 확보
- ▲ (임시숙소) 갑작스러운 범죄피해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하여 피해회복 및 심리적 안정을 도움
- ▲ (분과위원회) 법률지원분과위원회, 상담지원분과위원회 등 맞춤형 피해자 지원
- ▲ (통합지원네트워크 협의체) 범죄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 (마음치유학교) 범죄피해자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 ▲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 외국인 피해자들의 불편해소 및 사회복귀 지원

▣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 (김재희 교수)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등 형사절차에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당사자적 지위에 수반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범죄피해자는 여전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 형사사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전환적 패러다임으로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 형사사법과 회복적 정의의 지향점이 다르므로 형사절차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²⁾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객관적·제한적 기준(당사자의 동의, 기소할 충분한 증거 등)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기존 형사사법 절차에서 논의되는 회복적 사법으로 경찰단계에서의 '회복적 대화모임', 검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 등이 있음

- 처벌중심의 형사사법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도기에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토론자들은 형사절차에서 회복적 정의와 피해자 중심적 사고를 반영한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회복적 정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의 조화 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였음

▣ 형사조정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 (차경자 검사)

- 형사조정 제도는 '07. 8.경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래, '10. 5.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여 '23. 형사조정 의뢰율 5.8%, 성립율 62.3%에 이를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형사조정은 분쟁의 종국적인 조기종결로 인한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과 당사자간의 관계회복 뿐만 아니라, 사법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합니다.

- ▲ (이웃 간 갈등치유 사례) 이사 온 피해자가 집을 신축하면서 통행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감하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쌍방 화해 및 조건 없는 조정성립을 이끌어 냄으로써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
- ▲ (민·형사 통합 분쟁해결 사례) 업무상과실에 의한 의료사망사고를 주장하는 고소사건에서, 의학박사인 조정위원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장기간 계속 중이던 민사소송 소가의 70%로 합의하는 조정성립을 이끌어 냄으로써 민·형사 분쟁을 한 번에 종결
- ▲ (신속한 피해회복 사례) 다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안에서, 공인노무사인 조정위원이 국가지원제도인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조정성립을 이끌어 냄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 도모

- 현행 형사조정 제도는 검찰 수사 중인 경미사건 위주로 조정에 회부되는 대상의 한계, 조정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효력의 한계, 추상적인 위원 위촉기준으로 인한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대상의 한계) 조정회부 사건유형을 실질적인 분쟁해결이 필요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형사절차 쉰 단계(경찰-검찰-법원)에 걸친 회복적 사법절차 도입 필요
- ▲ (법적효과의 한계) 법제화를 통해 조정결과에 대한 효력 및 금전합의 시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
- ▲ (전문성의 한계) 상근위원 중 법률전문가 부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정위원 위촉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

- 형사조정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민사조정 제도를 참고하여,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상임 형사조정위원 제도 도입,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형사조정센터 도입, 형사조정법 개별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상임 형사조정위원 제도 도입) 다양한 쟁점이 얽힌 사건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중심의 상임 형사조정위원 위촉 필요
- ▲ (형사조정센터 도입) 형사조정 활성화를 위한 형사조정 제도의 역할·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인 형사조정센터 설립 필요
- ▲ (형사조정법 제정)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일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형사조정 제도의 확대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개별입법 필요

※ 토론자들은 형사조정 제도의 성과와 형사조정센터 설립 및 형사조정법 제정 등 개선 필요성과 발전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공판단계에서의 조정회부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였음

III

향후 계획

- 검찰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